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지침

제정 2021. 04. 30.

제4차 개정 2024. 06. 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지대학교 「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조 및 제31조의2에 의거 학생부종합전형의 효율적 추진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4.01., 2024.06.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학생부종합전형”이란 대학이 학생의 학업능력과 창의성, 사회성, 성실성 등 잠재력과 소질 및 개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하는 입학전형을 말한다.
- ②“입학사정관”이란 다양한 전형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학업능력, 잠재력, 소질 등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입학전형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입학사정관의 구분) 본교의 입학사정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구분 | | 내용 |
|-----------|-------------|---|
| 전임 사정관 | 채용사정관 | 입학사정관의 자격을 갖추고 입학사정관으로 채용된 자 |
| | 전환사정관 | 기존 교직원 중에서 입학사정관으로 보직이 변경된 자 |
| | 교수사정관 |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상시적으로 학생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대학이 ‘입학사정관’ 보직을 부여하여 책임시간 감축 및 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교수 |
| 위촉 사정관 | 내부 위촉사정관 | 조교를 제외한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생선발 기간을 포함해 일정기간 동안 입학사정관으로 위촉된 자 |
| | 외부 위촉사정관 | 대학 외부의 명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학생선발 기간을 포함해 일정기간 동안 입학사정관으로 위촉된 자 |

제3조의2(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인)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과정을 참관하기 위하여 외부 입학전문가를 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인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6.12.]

제4조(교육훈련) 입학사정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정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5.)

| 구분 | | 이수시간 |
|-------|-------|------------|
| 전임사정관 | 신임 | 120시간 이상 |
| | 경력 | 매년 40시간 이상 |
| 위촉사정관 | 신임/경력 | 매년 40시간 이상 |

※ ‘입학사정관 직무윤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이해도 제고’ 필수 이수 (개정 2021.07.23.)

제5조(윤리강령준수) ① 입학사정관은 별표 1의 ‘상지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학사정관 퇴직 서약서’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한다.(별지 수정 2024.06.12.)

② 학생부종합전형에 참여하는 모든 평가위원은 매 학년도 평가 시작 전에 공정하고 책임있는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퇴직 후 취업제한) 입학사정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따라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제6조의2(퇴직사정관 모니터링) ① 입학사정관은 퇴직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입학사정관 퇴직 서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퇴직사정관 모니터링 동의서를 작성하고, 3년간 취업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별지 신설 2024.06.12.)

②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관리감독 기관인 시도교육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재직 중 취득한 정보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 고발조치한다.

[본조신설 2024.06.12.]

제7조(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 ①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교 전임사정관과 모집단위별 위촉사정관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06.12.)

③ 위촉사정관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입학전형 종료일(정규학기 시작일 전날)까지로 한다.(개정 2022.04.01., 2024.06.12.)

④ 전임 및 위촉사정관은 평가를 위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입학처에서는 교육 안내와 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06.12.)

⑤ 학생부종합전형의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매 학년도 전형별 모집요강 및 시행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24.06.12.)

[제목개정 2022.04.01.]

제7조의2(학생부종합전형재심위원회) ①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점수가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재심위원회 구성 후 회부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모집단위 소속 단과대학별 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모집단위 소속 단과대학장(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입학전형 종료일(정규학기 시작일 전날)까지로 한다.(개정 2024.06.12.)

[본조신설 2022.04.01.]

제7조의3(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 ①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별 점수 분포의 타당성, 변별력 확보 여부, 평가영역 및 평가요소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총평을 위하여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입학처장(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위촉사정관 및 전임사정관으로 위촉한다.

③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입학전형 종료일(정규학기 시작일 전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4.06.12.]

제8조(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①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입학사정관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②대학은 모든 응시생의 서류가 내실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이 심사하는 학생의 수와 응시자별 평가시간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토록 한다.

③평가 시 응시생의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정보 등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한다.

④평가 결과 평가점수 격차가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재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평가한다.

⑤전형자료로 활용된 서류는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10년 동안 보존한다.

제9조(기타)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공통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상지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본 윤리강령은 상지대학교 입학사정관이 공정하고 신뢰로운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의 기본 윤리를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전형 홍보

하나, 입학사정관은 입학 상담을 실시할 경우 언행의 품위와 적절성을 유지하며, 모든 고교 및 지원자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고교 방문이나 입학 상담에 대한 대가로 선물이나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입학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 및 교사의 개인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개인 정보를 활용할 경우 학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입시 및 평가 관련 정보에 관하여 대학에서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대학 전체의 정책방향인 것처럼 언급하지 않는다.

□ 학생 선발 및 평가

하나, 입학사정관은 학생 평가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및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학생 평가 시 소속 대학의 평가기준을 명확히 숙지한 후 평가에 임하며, 공정한 시각을 견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학생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평가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평가 시 얻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와 관련한 윤리적·법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본인은 20 년도 상지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모든 업무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하며,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에 명시된 윤리 규칙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모든 지원자가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신입생 선발과정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공유하거나 유출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한다.
3. 학생선발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입학사정관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경제적 행위(금품 또는 선물 수수)를 하지 않는다.
4. 학생 선발과정에서 평가(또는 심의)를 위하여 정해진 사정원칙과 평가기준을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상 지 대 학 교 총 장 귀하

입학사정관 퇴직서약서

본인은 상지대학교 입학사정관직에서 퇴직하는 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교육 취업 제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따라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 및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등을 설립하거나 취업하지 아니하며, 대학에서 실시하는 현황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2. 개인정보 보호

학생 선발과정에서 취득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퇴직 이후에도 적극 보호하며 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기밀 유지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대학의 기밀 사항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영리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인)

상 지 대 학 교 총 장 귀하

퇴직사정관 모니터링 동의서

본인은 상지대학교 입학사정관직에서 퇴직하는 바, 퇴직사정관의 모니터링에 퇴직 후 3년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1. 퇴직사정관 모니터링 운영

- ① 재취업 : 본교 입학처로 재취업 관련 통지(퇴직자→입학처)
- ② 연락처 변경 : 본교 입학처로 변경 정보 통지(퇴직자→입학처)
- ③ 정기연락 : 매년 3월 / 9월 중 유선, 이메일 연락(입학처⇄퇴직자)
- ④ 수시연락 : 기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퇴직사정관 모니터링 동의 : 동의() / 미동의()

3. 퇴직 후 연락 가능한 연락처

| 구분 | | 정 보 |
|--------|-------|-----|
| 휴대전화 | 본인 | |
| | 긴급연락처 | |
| 이메일 주소 | | |

년 월 일

성 명 : (인)

상 지 대 학 교 총 장 귀하